

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

-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재) -

고용노동부 심사 결과 인천 (구)동구 철강산업 지역이 ‘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’으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,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관내 철강업 및 관련 산업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심사 조건 및 지침에 의거, 철강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※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8.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

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
「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」
참여자 모집 공고**[재]**



인천상공회의소

1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인천광역시 철강업 및 연관(전·후방) 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
- 사업기간 : 2026. 4. 16.(목) ~ 2026. 12. 31.(목)
- 신청기간 : 2026. 7. 9.(목) 10:00 ~ 2026. 7. 31.(금) 17:00

※ 2차 지급 예정일: 2026. 8. 31. / 향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

- 추가모집 : 총 2,635명(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(90%) : 2,523명 + 그 외 지역(10%) : 112명)

※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집중 지원

※ 지역 구분(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/그 외 지역)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적용

- 지원대상 및 요건

공통요건 (모두 충족)	
주소지	■ 1차 공고일('26.6.5.) 이전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자
근무지	■ 인천시 소재 본사 및 사업장 ■ 우선지원 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) [별첨1] ■ 철강업종 연관(전후방)기업: 기업 리스트 확인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주1) 철강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41 보유 주2) 철강업 연관(전후방) 기업 : 연관산업 업종코드 보유 또는 기업 리스트* 확인 주3) 철강업 연관(전후방) 기업 : 업종코드 미보유 및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** * 「철강산업 및 연관(전후방)기업」 목록은 “인천버팀이음” 홈페이지 게시 ** 별도 증명을 제출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
소 득	① 2025년 기준 소득액 세전 5,500만 원 이하(비과세 제외 : 수당 및 성과금 등) ② 중도 입사 등 ①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,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원 이하 [기타소득(연말정산 환급금, 성과금 등) 제외] ※ 소득 산출 시 급여소득명세 세전급여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→ 소득요건 자가진단 및 증빙 확인서(서식 4) 제출 必
상용직 여부	■ 인천광역시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에 재직하는 상용직 근로자 ※ 계약직, 인턴 등 신청 가능(일용근로 제외) ■ 인천광역시 소재 본사 및 사업장에 소속된 상용근로자로서, 고용보험 가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※ 인천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(타지역)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, 인천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으로 대체 가능
※ 참여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 및 유의사항 필수 확인(p.4)	

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 근로자 인정 범위

- 1) 인천 소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철강업종(C24, C25) 재직자
- 2)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소재 입주기업(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)에서 근로중인 자
- 3) (기타) 인천 소재 철강 업종 관련 기업에서 근로 중인 자(입증자료 필요)

- ① 사업자 등록증: 업종 및 업태 확인, 주소지 확인 등
 - ② 관계 서류(택1):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출입증,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, 그 외 인천소재 근로자임을 입증
 -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서류
- 4) 철강기업의 협력사(파트너사) 확인 자료,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, 국세청 업종코드 업종 및 업태,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
 ※ 철강산업 및 연관(전후방)기업 리스트 게시(“인천버팀이음” 홈페이지 게시)

□ 지원내용 :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(1회 지원)

요건	본인(부양가족 없음)	본인+부양가족 1명	본인+부양가족 2명 이상
지원금액	50만 원	65만 원	80만 원

※ 부양가족의 경우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자녀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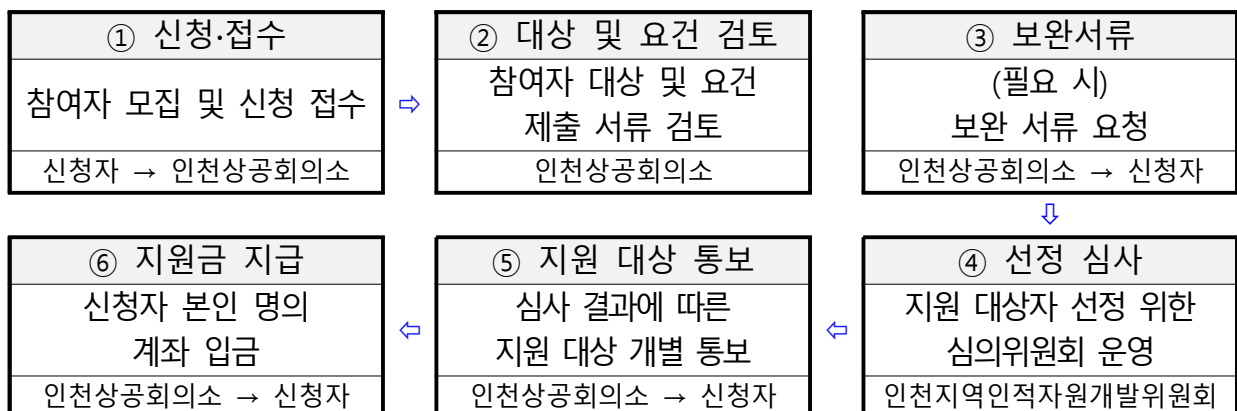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방법 : 현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지역 소비 유도를 위해 선정자 본인 명의의 ‘인천e음카드 포인트’ 로 지급

□ 우선선발 대상(인원 초과 시 순차 적용)

- ① 1순위 : 소득수준이 낮은 자(저소득층 우선 보호)
- ② 2순위 : 부양가족이 많은 자
- ③ 3순위 : 고령자 우선 지원(생년월일 기준)

※ 지원규모, 지원대상,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승인 사항임

2 지원절차



3 신청 방법 및 선정

□ 온라인 접수 : 2026. 7. 9.(목) 10:00 ~ 2026. 7. 31.(금) 17:00

○ 전용웹사이트 : 인천버팀이음.kr 접속 후 필수 서식을 다운받아 요건에 맞춰 업로드

□ 오프라인(현장) 접수처 운영

○ 접수장소 : (구)동구 주민행복센터 2층(제물포구 염전로 40번길 70)

○ 운영시간 : 평일 10:00 ~ 17:00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- 현장지원 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해 전담 인력이 현장에서 접수를 직접 대행·지원

현장 방문 시 신청자 유의사항

1. 방문 전 반드시 "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"을 사전 확인 바랍니다.
2.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 없이 지참하셔야 당일 접수 검토가 가능합니다.
3. 본 지원금은 '인천e음카드 포인트'로 지급되므로, 신청 전 본인 명의의 e음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선정방법: 사업별 자체 심사(선정위원회)를 통한 선정

4 제출 서류

□ 서류기준 :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파일([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](#))에 한하여 인정

순번	서류 및 증빙목록	부수/제출방식	발급처 및 비고
1	(서식1) 「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	1부/업로드	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
2	(서식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부/업로드	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제출
3	(서식3) 부정/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	1부/업로드	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제출
4	(서식4) 소득요건 자가진단 및 증빙 확인서	1부/업로드	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제출
5	재직증명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(택1)	1부/업로드	회사/국세청 홈택스 발급
6	근로소득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(택1)	1부/업로드	회사/국세청 홈택스 발급
7	주민등록등본	1부/업로드	정부24발급 (부양가족 차등검증용)
8	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 서류 화면 캡처본 ※ 사업장총괄카드 대규모 기업 해당여부에 '비해당'으로 표기되어야 함	-	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
9	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 입증서류 ※ 「인천 철강산업 및 연관(전후방) 기업」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	1부/업로드	-

* 증빙 서류 발급에 대한 상세 방법은 [붙임 2 증빙자료 발급 방법 및 서류 작성 안내](#) 참고

5 지원 제외 대상자 및 유의사항

□ 지원 제외 대상자

- 공고일 기준 퇴사자(고용보험 상실한 자)
- ^{현 사업장}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(자녀·손자녀, 외손자녀, 증손자녀등) 관계에 있는 자
- 지원대상 기간 중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
(예: 청년내일채움공제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, 일자리 채용 지원금 등)
-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했던 자
-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타 지역 지사에 채용 되어 근무했거나 재택근무 형태로 근로한 자
-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*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로자

□ 행정 유의사항 및 환수 조치

-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프로젝트 지원금(퇴직근로자 / 화물종사자) 간 중복 신청 불가
-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, 첨부파일 양식으로 신청
- 제출서류(신청서 등)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문자 발송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
- 변동사항 통보 의무: 신청 후 주소지 변경, 퇴사 등 변동 사항이나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인천상공회의소에 통보해야 함
- 설문지 참여 필수: 지원금 수령이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‘사후관리 설문조사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사용기한: 본 인천e이음카드 포인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됨
- 본 사업은 예산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,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름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벌칙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이 부과될 수 있음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
-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6 문의처 및 양식다운로드

- ☐ 수행기관 : 인천상공회의소(버팀이음 프로젝트 전담팀)
- ☐ 전화번호 : 032-810-2932 ~ 2936
- ☐ 전자우편 : saicore@incham.net

양식 다운로드

- 인천광역시 누리집(<https://www.incheon.go.kr/>) 고시 및 공고
- 인천상공회의소(<https://www.incham.net>) 공지사항
- 인천버팀이음 홈페이지(인천버팀이음.kr) 공지사항

-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- 제출서류

[서식1: 참여신청서]

[서식2: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]

[서식3: 부정/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]

[서식4: 소득요건 자가진단 및 증빙 확인서]

[별첨1: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]

[별첨2: 한국표준산업분류표]

『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』 참여 신청서

신청자 정보	성 명		주 민 등 록 번 호	
	주민등록상 주소지		연 락 처	
	인천e음카드 번호			
	부 양 가 족 * 확 인	☐ 본인	☐ 본인 + 부양가족 1인	☐ 본인 + 부양가족 2명 이상
기업 정보	사 업 장 명			
	사 업 장 주 소			
	담 당 자 / 연 락 처			

※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목록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, 소속기업정보(담당자, 연락처) 입력 생략 가능

철 강 업 종 분 야 연 관 성	※ 인천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 내륙)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(전후방)기업 (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) ☐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철강업종(C24, C25) ☐ 「철강산업 및 연관(전후방)기업」 목록 해당 ☐ 제물포구(구 동구+중구내륙) 내 철강업 연관(전·후방) 기업(별도증빙) ☐ 2026. 4. 16.이후 철강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(별도증빙) ☐ 그 외 인천시 소재 철강업종 관련 기업(별도증빙)
	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☐ 예 ☐ 아니오 (참고) 우선지원 대상기업 :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서 정한 기업

주요확인 사항	타 지원사업 참여 여부	☐ 예 ()	☐ 아니오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」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

- 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,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「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」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이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·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

2026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인)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개인용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4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사업주 친인척 관계 확인,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(휴대)전화번호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○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고용노동부,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

○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여부 확인, 사업주 친인척 관계 확인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	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(휴대)전화번호, 최종학력, 재직여부, 경력기간 등	수행기관	중부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정보원, 인천광역시, 인천지역자원개발위원회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3.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『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-버팀이음프로젝트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
신청자 정보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성 명)	본인	☐ 동의 ☐ 미동의	☐ 동의 ☐ 미동의	☐ 동의 ☐ 미동의	
(주민등록번호)					
(연락처)					

2026년 월 일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◆ 부정수급이란?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팀이음 프로젝트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-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- ② 지급된 지원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- 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《 부정수급 사례 》

1. 자격여부 및 재직기간·경력기간 등에 대해 변조 및 거짓 신고

2.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·제출

- ①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
-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
3.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예)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

□ 중복수급 확인사항

확 인 사 항	예	아니오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☐	☐
② 본인은 사업주 본인이거나,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가 아님	☐	☐
③ 현재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	☐	☐
④ 신청 일 기준 사업신청 대상에 적합해야 함을 인지합니다.	☐	☐

위와 같이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근로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[서식4] 소득요건 자가진단 확인서

『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』 소득요건 자가진단 확인서

1. 신청자 기본 정보

성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입사일자	

2. 소득 산출 유형 및 제출 서류 선택(본인에게 해당하는 1개 유형만 선택)

선택	구분 및 요건
☐	[유형 A] 2025년 전체 기간(1년) 재직자 : 2025년 연간 소득 5,500만 원 이하
☐	[유형 B] 2025년 중도 입사자 및 2026년 신규 입사자 : 2025년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 원 이하

3. 소득금액 산출 기준 자가 점검(공통)

확인사항	예	아니오
① (세전기준)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.	☐	☐
② (비과세 제외) 식대, 차량보조금, 보육수당 등 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였다.	☐	☐
③ (기타소득 제외) 명절 상여금, 인센티브,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기타/일시적 소득을 제외하였다.	☐	☐
④ (서류 유효성) 준비한 소득 증빙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이며, 주민등록번호 전체(13자리)가 표기되어 있다.	☐	☐

※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인)

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수행기관 담당자 확인표(※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.)

구분	확인사항	적합	부적합
서류	신청자가 선택한 [유형]과 실제 제출된 증빙 서류가 일치하는가?	☐	☐
유효	제출된 소득 증빙 서류가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인가?	☐	☐
보안	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가?	☐	☐
소득	[유형 A] 명세서상 총급여(비과세 제외) 5,500만 원 이하인가? [유형 B] 비과세/기타소득 제외 세전 월평균 450만 원 이하인가?	☐	☐

※ 특이사항 및 보완요청 내역 :

검토일자 : 2026. . .

검 토 자 소속 : 성명 : (서명)

[별첨1]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(제12조제1항 관련)

[고용보험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5. 10. 1.>]

산업분류	분류기호	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
1. 제조업[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(34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	C	500명 이하
2. 광업	B	300명 이하
3. 건설업	F	
4. 운수 및 창고업	H	
5. 정보통신업	J	
6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[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(76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	N	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9. 도매 및 소매업	G	200명 이하
1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11. 금융 및 보험업	K	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13. 그 밖의 업종		100명 이하

비고 :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
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[별첨2] 한국표준산업분류

지원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)

■ 철강업종 및 전·후방 산업 업종 1차 철강 제조업(C241) 및 연관된 산업 지원

코드번호 (KSIC 1차)	산업분류명	비고
C241	1차 철강 제조업	기준산업
C2431	금속 주조업	철강 제품을 소비/가공하는 산업
C251	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	
C259	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	
C291	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C292	특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
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
C340	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
F41~42	건설업	